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68호)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88호)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61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47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42호)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28호)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34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60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00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50호)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65호)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19호)

2026. 7.

기 후 위 기 특 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8
IV. 검토의견	21
1.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	21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 명시	21
나.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NDC) 설정 등	26
다.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	40
라. 중장기감축목표등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 추가	46
마. 중장기감축목표등 변경·설정 시 국회 심의 신설	48
바.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51
사.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제출 등 ..	55
2. 탄소예산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등	57
가.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62
나.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 결과보고서에 탄소예산 포함	65
3.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 수립 근거 마련	67
4. 국가기본계획 및 지방계획 수립 체계 개편	73

가. 국가기본계획 수립 체계 개편	82
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체계 개편	87
다.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등	90
5.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93
6. 기타 旣개정·의결사항	99

※ 참고자료 110

1. 기후 헌법소원 관련 현재 결정요지	110
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111
3.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113
4.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타부처 계획	114

I. 제안경위

1. 2025년 6월 25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25년 7월 15일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3. 2025년 8월 20일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4. 2025년 9월 12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5. 2025년 11월 14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6. 2026년 2월 3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7. 2026년 2월 6일 김종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8. 2026년 3월 13일 위성곤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9. 2026년 3월 16일 위성곤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0. 2026년 4월 10일 김소희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1. 2026년 4월 21일 이종배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2. 2026년 4월 24일 최혁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혜경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2. 서왕진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해당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개정 필요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개선계획 미비 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정책 대응 강화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탄소예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2조제3호 탄소중립 정의에 따라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함. 이 때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감축목표에 포함하여 감축 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선계획이 미흡할 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안 제9조).

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탄소예산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3. 이소영의원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는 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②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③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즉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고, 탄소예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1%, 2040년에 80%, 2045년에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안 제8조제2항).

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배출량의 기준을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후단).

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 탄소 예산, 과학적 분석과 예측, 국제적 행동의 기준을 포함함(안 제8조 제6항).

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사.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안 제22조의2).

아.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4. 박지혜의원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10년을 계획기

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 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도별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 목표 미달 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2030년에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라.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매년 6월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90일 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

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5. 윤준병의원안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항).

6. 김위상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7. 김종민의원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8. 위성곤의원안(2217460)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

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호 신설 등).

9. 위성곤의원안(2217500)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10. 김소회의원안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직된 감축 목표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11. 이중배의원안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 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12. 최혁진의원안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뿐만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참여형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47조 및 제52조).

Ⅲ.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2건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현행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관련 개정사항과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현행 제8조 구조 및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항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제2항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제3항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감축목표 설정
제4항	중장기·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의 5년 주기 재검토 및 변경·신규 설정
제5항	중장기·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9가지)
제6항	중장기·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공청회 등 개최
제7항	위임규정

먼저, 제8조 관련 개정사항은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명시(신설), ②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NDC) 설정(現 제8조 제1항) ③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 명시 등(現 제8조제2항·제3항), ④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 추가(現 제8조제4항), ⑤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신규 설정 시 국회 심의 절차 신설(신설), ⑥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변경 시 탄소예산 등 고려사항 추가(現 제8조제5항), ⑦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現 제8조제6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②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 수립 근거 마련, ③ 국가기본계획·시·도 계획·시·군·구계획 체계 개편, ④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 ⑤ 그 밖에 이미 개정되었거나 舊기후 위기 특별위원회¹⁾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²⁾ 등이 있음.

1) 2025.3.~2026.5.까지 활동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말함.

2)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2026.3.19.)에서 의결되었으나 특위의 활동기한 종료로 인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였음.

[개정안별 개정사항]

연번	발의의원	제8조(NDC)관련 개정사항	그 외 개정사항
1	정혜경 의원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⑥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⑤ (기반영)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 고려
2	서왕진 의원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명시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⑥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⑤ (기반영)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가 ⑤ (기반영) 이행현황 점검 제도 개정
3	이소영 의원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명시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③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 ⑥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②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 수립 근거 마련 ⑤ (기반영)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 추가 ⑤ (기반영) 국가기후과학위원회 설치
4	박지혜 의원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③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 ④ 감축목표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 추가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⑤ (기반영) 이행현황 점검 제도 개정
5	윤준병 의원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③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	-
6	김위상 의원	⑤ 중장기감축목표등 변경시 규 설정시 국회 심의과정 신설	-
7	김종민 의원	⑤ 중장기감축목표등 변경시 규 설정시 국회 심의과정 신설 ⑦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국민 의견 수렴 등	-
8	위성곤 의원 (17460)	⑥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⑤ (기반영) 국가기후과학위원회 설치
9	위성곤 의원 (17500)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명시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③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	③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체계 개편
10	김소희 의원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
11	이종배 의원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
12	최혁진 의원	② 5년단위 NDC 목표 설정 등 ⑥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①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④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등

이하 IV. 검토의견에서 이상의 구분에 따른 내용별 검토를 진행함.

IV. 검토의견

1.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 명시

서왕진의원안·위성곤의원안 제3조 및 이소영의원안 제8조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②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③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탄소 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서왕진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이소영의원안
<신 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

	<u>합하고 미래에</u> <u>과중한 부담을</u> <u>이전하지 않아야</u> <u>하며, 과학적 사</u> <u>실과 국제기준에</u> <u>근거하여 산출한</u> <u>탄소예산을 고려</u> <u>하여 설정한다.</u>	<u>합하고 기후변화</u> <u>의 영향과 온실</u> <u>가스 배출 제한</u> <u>의 측면에서 미</u> <u>래에 과중한 부</u> <u>담을 이전하지</u> <u>않아야 한다.</u>	<u>을 이전하지 않아</u> <u>야 한다.</u>
--	---	---	----------------------------------

현행법 제7조제1항3)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4)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5)에서는 2030년까지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
표”라 한다)로 한다.
-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
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
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
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
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
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한편,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⁶⁾ 및 법률유보원칙⁷⁾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노력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6)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로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치나 소극적 대응을 해도 침해될 수 있음.

7)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서왕진의원안	이소영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조문 위치	제3조(기본원칙) 제9호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1항	제3조(기본원칙) 제9호
주요 내용	①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 ②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 전 금지 ③탄소예산 고려	①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 ②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 전 금지 -	이소영의원안과 동일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서왕진의원안·위성곤의원안은 동 고려 사항을 이 법 전체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제3조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소영의원안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인 제8조제1항에 이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서왕진의원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탄소예산’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예산 배분 방법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를 고려 사항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8) 탄소예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2.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등’ 참조

있으며, 탄소예산에 관한 연구·분석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나.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NDC) 설정 등

정혜경의원안·박지혜의원안·윤준병의원안·위성곤의원안(2217500)·
 김소희의원안·이종배의원안·최혁진의원안 제8조제1항, 서왕진의원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이소영의원안 제8조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거나,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정혜경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최혁진 의원안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실가 스 배 출량을 2030년 까지 2 018년 의 국 가 온 실가스 배출량 대비 3 5퍼센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실가 스 배 출량을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비율만 큼 감 축하 는 것 을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가비 전 에 따 라 탄소예 산 을 고려하 여 국 가 온 실가스 순배출 량을 2 018년 의 국	② 정부 는 국 가 온 실가스 배출량 을 다 음 각 호 의 구분 에 해 당하 는 연 도까지 2018년 의 국 가 온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실가 스 배 출량의 지속적 이 고 실효적 인 감 축 을 위하여 2050년 까 지 국 가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실가 스 배 출량을 2050년 까지 2 018년 의 국 가 온 실가스 배출량 대 비 다 음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을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해 당 하 는 연 도 까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을 20 50년 까 지 2018 년 의 국 가 온 실 가 스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을 20 50년 까 지 2018 년 의 국 가 온 실 가 스	제8조(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등) ① 정 부 는 국 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을 다 음 각 호 의 연 도 까 지 2018 년 의 국 가

현 행	정혜경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최혁진 의원안
트 이 상 의 범위에 서 대 통령령 으 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 축하는 것 을 중장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이 하 “중 장기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중장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이 하 “중 장기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가 온 실가스 순배출 량 대 비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 큼 감 축하는 것 을 중장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이 하 “중 장기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실가스 배출량 대 비 해 당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비 율 이상의 범위에 서 대 통령령 으 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 축하는 것 을 중장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이 하 “중 장기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이 경 우 국 가 온실가 스 배 출량은 대 기 중 에 배출·	온실가 스 순 배출량 을 201 8 년 의 국 가 온실가 스 순 배출량 대 비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비 율 이상의 범위에 서 대 통령령 으 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 축하는 것 을 중장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이 하 “중 장기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비 율 이상의 범위에 서 대 통령령 으 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 축하는 것 을 중장기 국 가 온실가 스 감 축 목 표(이 하 “중 장기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지 20 1 8 년 의 국 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대 비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비 율 이 상 의 범 위 에 서 대 통령 으 로 정 하 는 비 율 만 큼 감 축 하 는 것 을 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이 하 “중 장 기 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이	배 출 량 대 비 선 형 감 축 경 로 에 따 른 비 율 수 준 에 서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비 율 만 큼 감 축 하 는 것 을 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이 하 “중 장 기 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다 만, 에 너 지 위 기 등 글 로 별 상 황	배 출 량 대 비 선 형 감 축 경 로 에 따 른 비 율 수 준 또 는 제 조 업 기 반 유 지, 산 업 계 부 담, 기 술 발 전 상 황 등 을 고 려 하 여 선 형 감 축 경 로 에 따 른 비 율 보 다 낮 은 수 준 에 서 대 통령 으 로 정 하 는 비 율 만 큼 감 축 하 는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대 비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비 율 이 상 의 범 위 에 서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비 율 만 큼 감 축 하 는 것 을 중 장 기 국 가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이 하 “중 장 기 감 축 목 표”라 한 다) 로 한 다.

현 행	정혜경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최혁진 의원안
			방출 또는 누출되 는 온 실가스 의 양 에 서 온실가 스 흡 수 의 양 을 상쇄한 순배출 량으로 본다.			경우 국가 온실 가스 배출 량은 순배 출량 으로 본다.	에따 라국 의을 저해 할우 려가 있 는 경우 감축 수단 의실 현가 능성 등을 고려 하여 선형 감축 경로 에따 른비 율보 다 낮 은 수 준 으 로 중 기 감 축 목 표 를 설 정 할 수 있 다.	것을 중장 기국 가온 실가 스감 축목 표(이 중 기 감 축 목 표 라 다) 로 한다.	
<신 설>	1. 2030 년까지 2018년 의 국 가 온 실가스 배출량	1. 2030 년까지 40퍼센 트 이 상 감 축	1. 2030 년: 100 분의 35 이상	1. 2030 년까지 35퍼센 트 이 상 감 축	1. 2030 년까지 35퍼센 트 이 상 감 축	1. 203 0년: 1 00분의 35 이 상			1. 2030 년: 10 0 분 의 40 이 상

현 행	정혜경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최혁진 의원안
<신 설>	대비 5 0 퍼센 트 이 상								
	2. 2035 년까지 2018년 의 국 가 온 실가스 배출량 대비 6 5 퍼센 트 이 상	2. 2035 년까지 65퍼센 트 이 상 감 축	2. 2035 년: 100 분의 61 이상	2. 2035 년 까 지 65퍼센 트 이상 감축	2. 2035 년까지 55퍼센 트 이 상 감 축	2. 203 5년: 1 00분의 60 이 상			2. 203 5년: 1 00분의 65 이 상
<신 설>	3. 2040 년까지 2018년 의 국 가 온 실가스 배출량 대비 7 5 퍼센 트 이 상	3. 2040 년까지 85퍼센 트 이 상 감 축	3. 2040 년: 100 분의 80 이상	3. 2040 년까지 85퍼센 트 이 상 감 축	3. 2040 년까지 70퍼센 트 이 상 감 축	3. 204 0년: 1 00분의 80 이 상			3. 204 0년: 1 00분의 80 이 상
<신 설>		4. 2045 년까지 95퍼센 트 이 상 감 축	4. 2045 년: 100 분의 90 이상	4. 2045 년까지 95퍼센 트 이 상 감 축	4. 2045 년까지 85퍼센 트 이 상 감 축	4. 204 5년: 1 00분의 95 이 상			4. 204 5년: 1 00분의 90 이 상
<신 설>		② 정부 는 중장 기감축목 표의 설 정과 이 행 점검 을 위하							

현 행	정혜경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최혁진 의원안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7조제1항⁹⁾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¹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¹¹⁾에서는 2030년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 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단위: 백만톤CO₂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주요 감축수단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¹⁾	- 전원믹스 재구성(석탄↓, 재생에너지↑ 등) - 전력시장 개선 등 수요 효율화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 공정 효율화, 연·원료 전환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유도
	건물	52.1	35.0 (32.8%)	35.0 (32.8%)	-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 건물 효율개선
	수송	98.1	61.0 (37.8%)	61.0 (37.8%)	- 무공해차·선박 보급 - 내연차 기준강화, 주행거리 감축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 저탄소 농축산업 기술 보급 - 설비 효율화·저탄소화
	폐기물	17.1	9.1 (46.8%)	9.1 (46.8%)	- 폐기물 원천감량 -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수소	(-)	7.6	8.4 ²⁾	- 그린수소 실증 및 인프라 구축 - 수소 활용범위 확대
	탈루 등	5.6	3.9	3.9	

령령으로 정한다.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주요 감축수단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 산림·습지 보호·복원 -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대
	CCUS ⁴⁾	(-)	-10.3	-11.2 ³⁾	- 근거법 제정 및 상용화 R&D - CCS 저장소 확보
	국제감축	(-)	-33.5	-37.5 ⁴⁾	- 국외 감축활동 수행 후 크레딧 거래

-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블루수소 +10.5만톤 → 온실가스 0.8백만톤 ↑)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5)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¹²⁾ 및 법률유보원칙¹³⁾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노력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12)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로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치나 소극적 대응을 해도 침해될 수 있음.

13)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임.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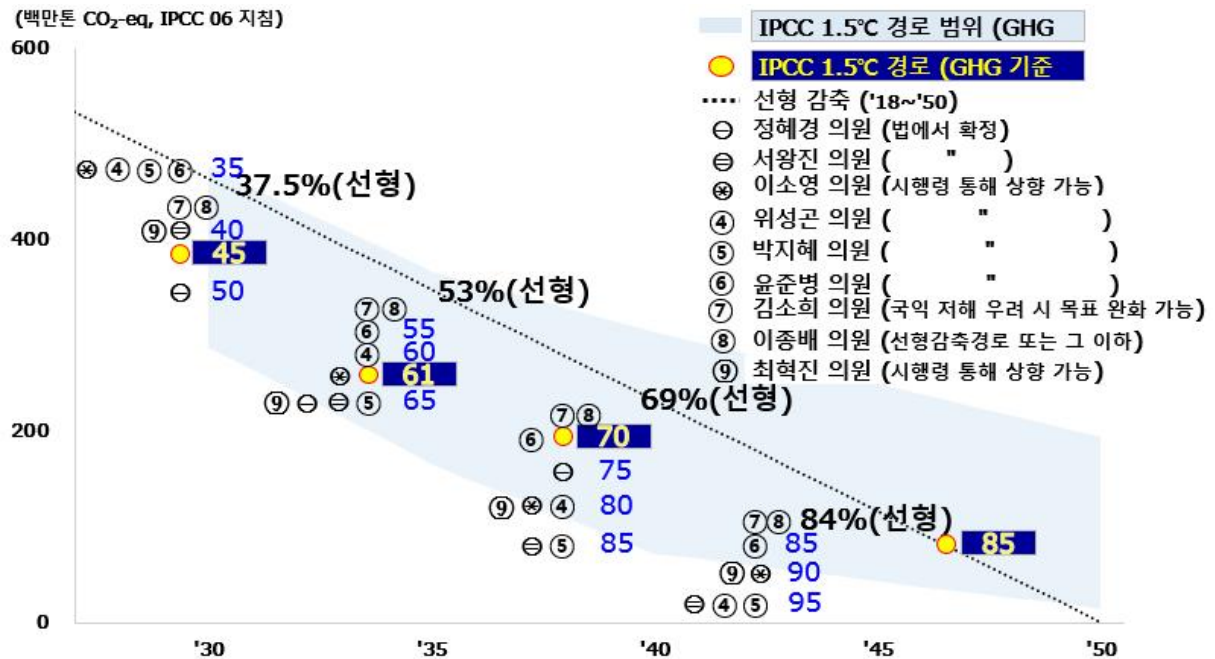
이에 9건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각각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거나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8조제1항의 위헌성을 없애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2018년 대비 감축비율, %)

연도	2035 NDC	IPCC 경로	선형 경로	정혜경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최혁진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30	법률 35 (시행령 40)	45	37.5	50	40	현행법과 동일				40	선형 감축 경로 + 단서	선형 감축 경로 or 이하
'35	53~61	61	53	65	65	61	65	55	60	65		
'40	-	70	69	75	85	80	85	70	80	80		
'45	-	-	84	-	95	90	95	85	95	90		
시행령 위임 여부				×	×	○	○	○	○	○	○	○

[개정안 및 IPCC 1.5℃ 감축 권고안 비교]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정혜경의원안·서왕진의의원안·최혁진의의원안은 현행법에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각 50%(정혜경의원안) 또는 40%(서왕진의의원안·최혁진의의원안)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데, 이는 2030 NDC와의 정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35 NDC, 공론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 부처 협의 및 舊2050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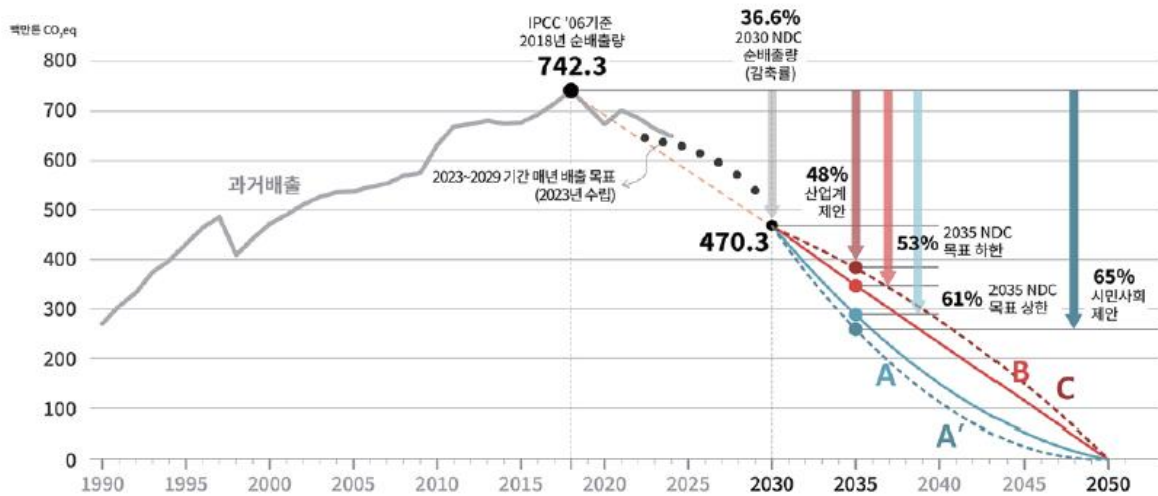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으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IPCC가 제시한 경로(61%)를 상한으로 하고, 2018년부터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 경로를 선형(53%)으로 가정했을 때의 목표치가 하한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단위: 백만톤CO₂eq, 괄호안 값은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18년	'24년	2035 NDC			
				△53%		△61%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순배출량		742.3	651.4	348.9	△302.5	289.5	△361.9
배출	전력	283.0	218.3	88.3 (△68.8%)	△130.0	70.0 (△75.3%)	△148.3
	산업	276.3	250.9	209.1 (△24.3%)	△41.8	190.6 (△31.0%)	△60.3
	건물	52.1	43.6	24.2 (△53.6%)	△19.4	22.8 (△56.2%)	△20.8
	수송	98.8	97.5	39.3 (△60.2%)	△58.2	36.8 (△62.8%)	△60.7
	냉매	23.1	35.0	27.4 (+18.6%)	△7.6	25.5 (+10.4%)	△9.5
	농축수산	27.6	25.6	20.0 (△27.5%)	△5.6	19.5 (△29.3%)	△6.1
	폐기물	19.4	17.5	9.2 (△52.6%)	△8.3	9.0 (△53.6%)	△8.5
	탈루	3.7	3.2	2.6 (△29.7%)	△0.6	2.4 (△35.1%)	△0.8
	수소	0	0	8.1	+8.1	6.5	+6.5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6	-40.2	-38.3	+1.9	-39.3	+0.9
	CCUS	0	0	-11.2	△11.2	-20.3	△20.3
	국제감축	0	0	-29.8	△29.8	-34.0	△34.0

IPCC '06 기준 우리나라 1990~2024 순배출량 및 2035 NDC에서 고려된 미래 배출 경로 범위



- A' : 1.5℃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더 도전적인 경로 예시(시민사회 제안)
- A : 2035 NDC 목표 상한에 고려된 조기감축형 경로이자, IPCC AR6(2023년) 기준 1.5℃ 제한 시나리오 평균에 따른 경로
- B : 선형 감축 경로
- C : 지연 후 후반 집중 감축 경로로, 누적배출량 증가에 따라 온난화 심화(A' 대비 C 경로의 누적배출량 약 1.8배)

각 개정안을 살펴보면, 2035년까지의 목표를 기준으로 정혜경의원안·서왕진의원안·박지혜의원안·최혁진의원안(65%), 이소영의원안(61%), 위성곤의원안(60%), 윤준병의원안(55%)은 2035 NDC 하한(53% 감축)보다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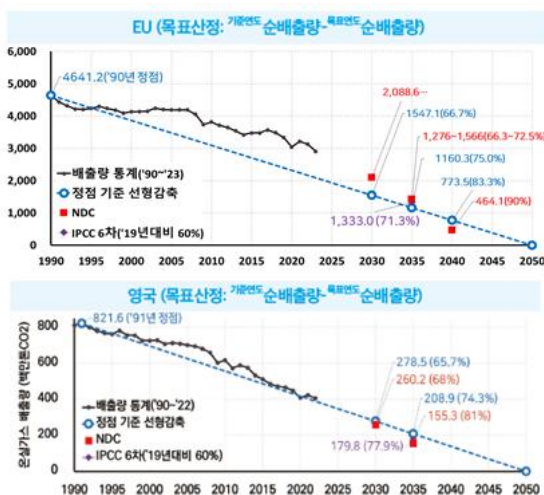
김소희의원안·이종배의원안은 선형감축경로(2035년 기준 53%) 또는 산업계 부담, 글로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완화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 범위와 동일한 53%~61%에서 2035년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2040년·2045년 목표 역시 2035

NDC의 연장선상에서 단일값이 아닌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 형태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영국·독일은 선형경로보다 강화된 수준, 일본은 선형경로 수준, EU는 2035년까지는 선형경로보다 완화된 수준을, 2040년에는 선형경로보다 강화된 수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미국] 2024년 2035 NDC를 제출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파리협정 탈퇴('25)

[중국] 2024년에 배출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2035년까지 전 경제 부문에 있어 배출 정점으로부터 7~1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25)

주: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목표는 산정방법이나 기준이 달라, 비교를 위해 각국의 최신 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환산한 자료임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상 '31~'40년 감축목표('21.8월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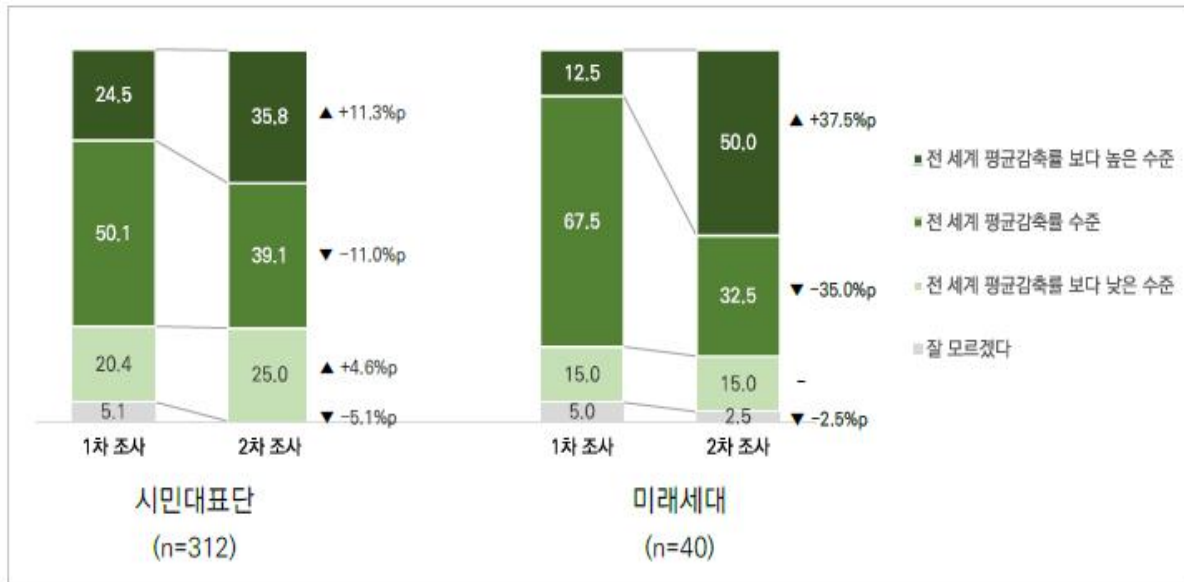
연도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90년 比	65%	67%	70%	72%	74%	77%	79%	81%	83%	86%	88%

한편,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2026.2.~4.) 하였으며, 감축목표 및 감축 경로에 관해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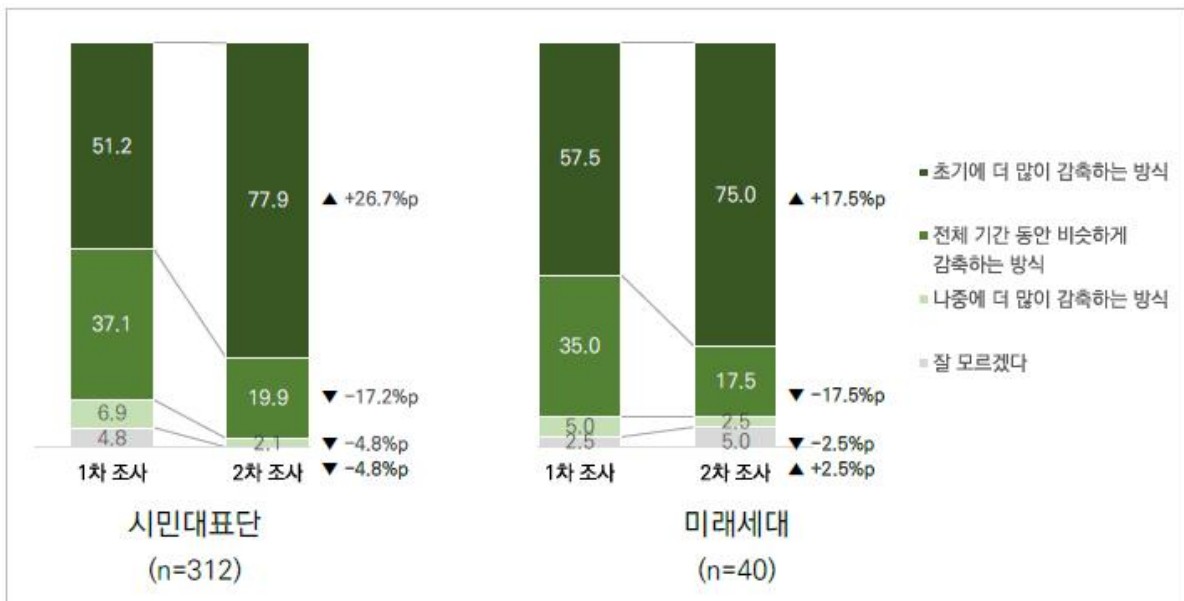
[감축목표에 관한 시민대표단 1차·2차 설문 결과]

(단위: %)



[감축경로에 관한 시민대표단 1차·2차 설문 결과]

(단위: %)



셋째, 정혜경의원안·서왕진의원안은 법률에서 중장기감축목표를 명시하며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나머지 7건의 개정안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하의 목표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이소영의원안에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순배출량(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배출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11월 법률을 개정¹⁴⁾하여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기준 역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

이소영의원안 제8조제3항·제4항, 박지혜·윤준병의원안 제8조제3항 및 위성곤의원안(2217500) 제8조제2항·제3항은 부문별 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20년(이소영의원안) 또는 2050년까지(위성곤의원안)로 설정하고, 연도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은 20년(이소영의원안), 10년(박지혜의원안), 5년(윤준병의원안) 또는 2050년까지(위성곤의원안)로 설정하는 한편, 연도별감축목표는 기준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박지혜·윤준병의원안)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②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생략)
②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의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

“부문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u>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u>	④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u>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u>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u>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연도별 감축 목표는 <u>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u>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u>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연도별 감축 목표는 <u>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u>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u>2050년까지의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u>

		<u>감축경로 이</u> <u>상이 되도록</u> <u>하여야 한다.</u>	<u>상이 되도록</u> <u>설정 하여야</u> <u>한다.</u>	
④ ~ ⑦ (생략)	⑤ ~ ⑧ (생략)	④ ~ ⑦ (생략)	④ ~ ⑦ (생략)	④ ~ ⑦ (생략)

현행법은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중장기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감축목표와 연도별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문별감축목표와 연도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체계]

구분	주요내용	위치
중장기감축목표 (제1항)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최상위 목표
부문별감축목표 (제2항)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장기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
연도별감축목표 (제3항)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

[2030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q)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기존NDC('21.10) ('18년 대비 감축률)	수정 NDC('23.3) ('18년 대비 감축률)
배출량*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32.8%)	35(△32.8%)
	수송	98.1	61(△37.8%)	61(△37.8%)
	농축수산	24.7	18(△27.1%)	18(△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	7.6	8.4
	기타(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2030 NDC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q)

부문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전환	269.6	223.2	218.4	215.8	211.8	203.6	189.9	173.7	145.9
산업	260.5	256.4	256.1	254.8	252.9	250.0	247.3	242.1	230.7
건물	52.1	47.6	47.0	46.0	44.5	42.5	40.2	37.5	35.0
수송	98.1	93.7	88.7	84.1	79.6	74.8	70.3	66.1	61.0
농축수산	24.7	22.9	22.4	21.9	21.2	20.4	19.7	18.8	18.0
폐기물	17.1	15.1	14.7	14.1	13.3	12.5	11.4	10.3	9.1
수소	(-)	3.4	4.1	4.8	5.5	6.2	6.9	7.6	8.4
탈루 등	5.6	5.1	5.0	5.0	4.9	4.8	4.5	4.2	3.9
흡수원	-41.3	-33.5	-31.3	-28.9	-30.4	-29.1	-28.3	-27.6	-26.7
CCUS	(-)	-	-	-	-0.4	-0.7	-1.3	-3.2	-11.2
합계	686.3*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

*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

** 국내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립, 최초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30년 목표에만 반영

개정안들은 이러한 부문별감축목표와 연도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연도별감축목표의 최저한(선형감축경로)을 설정함으로써, 차질 없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NDC 이행 및 미래세대로의 부담 이전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위성곤의원안
부문별감축목표 계획기간	20년	-	-	2050년까지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20년	10년 -기준시점~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 상이 되도록 설정	5년	2050년까지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고려시, 현시점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 외에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한 번에 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시스템을 고려하여 부칙 등으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기한을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¹⁵⁾이며,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는 연도별감축목표의 하한을 ‘선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의 높은 불확실성,

15) 예컨대, 부칙에 다음과 같이 NDC 기간별 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 수립 시기 규정

’31~’34년 : 2035 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26.12)

’36~’39년 : 2040 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31.12)

’41~’44년 : 2045 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36.12)

’46~’49년 : 2050 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41.12)

산업계의 부담 및 중장기 감축 기술발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라. 중장기감축목표등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 추가

박지혜의원안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재검토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탄소예산 및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박지혜의원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생 략)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④ -----탄소예산 및 국내외 여건----- ----- ----- ----- -----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 -----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생 략)

현행법은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중장기감축목표등”)가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검토 시 파리협정 및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변경·재설정하는 경우에는 협정 제4조¹⁶⁾의 진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재검토 하는 경우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짐.

다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예산 배분 방법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를 고려 사항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예산에 관한 연구·분석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16) 파리협정 제4조

3. 각 당사자의 차기 국가결정기여는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현재 국가결정기여보다 진전되는 노력을 시현할 것이며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마. 중장기감축목표등 변경·설정 시 국회 심의 신설

김종민의원안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재검토 후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4항),

김위상의원안은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종민의원안	김위상의원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④ ----- ----- ----- ----- ----- -----재검토하 고-----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④ (현행과 같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u>새로 설정할 수 있다.</u> <u><신 설></u>	----- ----- ----- ----- -----<u>새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⑤ ~ ⑦ (생략)	⑥ ~ ⑧ (생략)

현행법 제78조17)에서는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기본계획과 국가기본 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재설정 또는 신규 설정·변경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재검토 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2026.4. 법률이 개정¹⁸⁾되었으며,

既개정된 내용에 따라 동 개정안의 내용은 그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겠다는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6차 법안소위(2026.5.7.) 합의가 있었던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바.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정혜경·최혁진·위성곤(2217460)의원안 제8조제5항, 서왕진·이소영의원안 제8조제6항은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아동·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 탄소예산,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원안	이소영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최혁진의원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⑤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⑤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⑤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 ----- ----- ----- ----- ----- ----- -----.	⑥ ----- ----- ----- ----- ----- ----- ----- -----.	⑥ ----- ----- ----- ----- ----- ----- ----- -----.	⑤ ----- ----- ----- ----- ----- ----- ----- -----.	⑤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국제사	9. (현행과	9. (현행과	9. 제8조의	9. 제8조의	9. 잔여 탄

회의 기 후 위 기 대응 동 향	같음)	같음)	2에 따라 산출된 국 가 탄소예 산	2에 따라 산출된 국 가 탄소예 산	소예산 현 황
<신 설>	10.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10. 탄소예 산	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신 설>			11.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11.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⑥ ~ ⑦ (생 략)	⑦ ~ ⑧ (생 략)	⑦ ~ ⑧ (생 략)	⑥ ~ ⑦ (생 략)	⑥ ~ ⑦ (생 략)

현행법 제8조제5항에서는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국가비전 및 국가 전략,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시 고려사항(제8조제5항)]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개정안은 여기에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IPCC 보고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의원안	최혁진의의원안	이소영·위성곤(2217460)의원안
- 현행 제8조제5항 +			- 현행 제8조제5항제9호(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삭제 +
·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 탄소예산	· 잔여 탄소예산 현황	· 탄소예산 ·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아동,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신설¹⁹⁾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은 신설된 정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할 목표이므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예산 배분 방법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를 고려 사항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예산에 관한 연구·분석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6차 법안 소위(2026.5.7.)에서 개정안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8조제5항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음.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6차 법안 소위 합의 사항]

제8조제5항(현행유지) +	10.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2.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	---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사.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제출 등

김종민의원안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종민의원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⑤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⑤ (생략)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⑥ ----- ----- ----- ----- ----- <u>노력하여야 하며, 공청회 외에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수렴된 의견은 감축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며,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그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²⁰⁾에 따르면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짐.

다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도록 2026년 4월 법률이 개정²¹⁾되었으며,

既개정된 내용에 따라 동 개정안의 내용은 그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겠다는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6차 법안소위(2026.5.7.) 합의가 있었던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탄소예산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등²²⁾

정혜경·서왕진·이소영·위성곤(2217460)·박지혜·최혁진의원안은 ① 탄소 예산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② 최혁진 의원안 제9조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 결과보고서에 탄소예산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원안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위성곤의원안 (2217460)	최혁진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신설>	8의3. “탄 소예산”이 란 2050 년까지 탄 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5 년 단위로 설정되는 국가 전체 로 배출할	18. “탄소 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 내로 제한 하기 위하 여 특정	18. “탄소 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 승 수준을 특정한 온 도 목표 이내로 억 제하기 위 하여 특정 연도 이후	18. “탄소 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 승을 국제 사회가 합 의한 온도 목표 이내 로 억제하 기 위하여 허용되는	18. “탄소 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 승 수준을 특정한 온 도 목표 이내로 억 제하기 위 하여 특정 연도 이후	

22) ‘1.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에서 안 제8조와 관련하여 旣논의된 내용은 제외함

현 행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의원안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위성곤의원안 (2217460)	최혁진의의원안
9. ~ 17. (생 략)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허 용 가능한 총량을 말 한다.	연도 이후 우리 나라 가 배출 가능한 온 실가스의 잔여 총량 을 말한 다.	에 허용되 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 을 말한 다.	잔여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을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마 다 산출한 것 을 말한 다.	에 허용되 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 을 말한 다.	
<신 설>	제8조의2(탄 소예산의 설정 등) ① 제15 조 제 1 항 에 따른 2 050 탄소 중립녹색 성장위원 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탄소예산 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 1 항 에 따른 205 0 탄소중 립녹색성 장위원회 는 탄소예		제8조의2(탄 소예산 산 출) ① 제 22 조 의 2 에 따른 기 후 과 학 위 원 회 는 중 장 기 감 축 목 표 등 을 설정 또는 변경 하기 위하 여 국가 탄소예산 을 2년마 다 산출하 고, 그 결 과 보고서 를 작성하 여 공개하 여야 한 다. ② 제1항		제8조의2(탄 소예산의 산출) ① 제19조의 2에 따른 기 후 과 학 위 원 회 는 중 장 기 감 축 목 표 등 을 설정 또는 변경 하기 위하 여 국가 탄소예산 을 2년마 다 산출하 고, 그 결 과 보고서 를 작성하 여 공개하 여야 한 다. ② 제1항	제7조의2(탄 소예산의 설정) 정 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 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 도로 제한 하기 위하 여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연도 이후의 온 실가스 누 적 배출 허용 총량 (이하 “탄 소예산”이 라 한다) 을 설정하 여야 한

현 행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원안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위성곤의원안 (2217460)	최혁진의원안
	산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 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 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현 행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원안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위성곤의원안 (2217460)	최혁진의원안
제9조(이행 현황의 점검 등) ①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국가 탄소 예산의 산 출 방법, 결과 보고 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국가 탄소 예산의 산 출 방법, 결과 보고 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제9조(이행 현황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에 따른 결과 보고 서에는 온 실가스 배 출량이 연 도별 감축 목표에 부 합하는지 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 된 부진사 항 및 그 개선사항						② ----- ----- ----- ----- ----- ----- ----- ----- -----잔 여 탄소예 산 현황,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 된 부진사

현 행	정혜경의원안	서왕진의원안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위성곤의원안 (2217460)	최혁진의원안
과 그 밖 에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사항 이 포함되 어야 한 다.						항-----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 행 과 같음)
제16조(위원 회의 기 능)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 한다.	제16조(위원 회의 기 능) ----- ----- ----- ----- ----- ----- -----.	제16조(위원 회의 기 능) ----- ----- ----- ----- ----- ----- -----.				
1.·2. (생 략)	1.·2. (현 행과 같 음)	1.·2. (현 행과 같 음)				
<신 설>	2의2. 탄소 예산의 설 정에 관한 사항	2의2. 탄소 예산의 산 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 14. 략)	3. ~ 14. (현 행 과 같음)	3. ~ 14. (현 행 과 같음)				

가. 탄소예산의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탄소예산은 전 지구 온도 상승을 특정수준(1.5~2℃)으로 제한하기 위한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Remaining Carbon Budget)을 의미하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제한하는 목표온도(1.5℃, 1.7℃, 2.0℃)와 확률(17%, 33%, 50%, 67%, 83%)에 따라 추정된 전 지구적 탄소 예산을 제시한 바 있음.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상의 전 지구적 탄소예산]

1850~1900년 대비 추정된 한계온도 (℃)	'10~'19년 대비 한계온도까지 남아 있는 지구온난화 (℃)	2020년 초부터 산출된 잔여탄소배출총량(억톤CO ₂)				
		한계온도로 지구온난화 억제 가능성(%)				
		17%	33%	50%	67%	83%
1.5	0.43	9,000	6,500	5,000	4,000	3,000
1.7	0.63	14,500	10,500	8,500	7,000	5,500
2.0	0.93	23,000	17,000	13,500	11,500	9,000

이에 개정안은 특정 목표(온도 또는 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탄소예산 산정(설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과학적·국제기준에 따라 산출된 탄소예산을 설정·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각 개정안의 탄소예산 정의 비교]

구분	탄소예산 정의
정혜경의원안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국가 전체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허용가능한 총량
서왕진의원안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 우리나라가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잔여 총량
이소영· 위성곤(2217460)위원안	-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
박지혜의원안	-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한 것

[각 개정안의 탄소예산 산정(설정) 내용]

구분	탄소예산 산정(설정)
정혜경의원안 (안 제8조의2 및 제16조)	- (안 제8조의2) 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설정하며, 탄소예산 설정·변경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변경 시 반영 - (안 제16조)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탄소예산 설정에 관한 사항 추가
서왕진의원안 (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	- (안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 - (안 제16조)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탄소예산의 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이소영· 위성곤(2217460)위원안 (안 제8조의2)	-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공개 - 결과보고서에는 ▲국가 탄소예산 추정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부합여부 및 이에 대한 권고안 등 포함
박지혜의원안 (안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
최혁진의원안 (제7조의2)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누적 배출 허용 총량 설정

다만, 동 개정사항에 대해 탄소예산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 예산 명시는 신중해야 한다는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가 있었으며,

[탄소예산 도입 관련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탄소예산 명시 필요	탄소예산 명시 신중검토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국제기준(탄소예산)이 없으면 만들어 나갈 필요 -해외에서는 이미 나름의 방법론으로 탄소 예산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기후 목표를 정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음 -우리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탄소예산 검토 필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용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기후과학원에서 연구하여 향후 NDC 설정 시 백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예산 배분 방법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를 고려 사항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탄소예산에 관한 연구·분석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 결과보고서에 탄소예산 포함

현행법²³⁾에서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면서, 해당 결과보고서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점검결과 확인된 부진 사항 및 그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잔여 탄소예산 현황을 결과보고서에 추가 하려는 것으로, 앞서 검토한 탄소예산의 법률 명시 논의와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현행	-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 -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 확인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 현행 + <u>잔여 탄소예산 현황</u>

3.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이소영의원안은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 시설을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지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 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석탄화력발전의 종료) ①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석탄화력발전소”라 한다)을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년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에 31.4%(184.9TWh)에서 2030년까지 17.2%(110.5TWh)로 축소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화된 28기를 2040년

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²⁴⁾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²⁵⁾임.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단위: TWh, %)

연도	구분	원전	석탄	LNG	재생e	신e	청정수소 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무탄소*
'23년 (실적)	발전량	180.5	184.9	157.7	49.4	7.2	-	8.3	588.0	358.2	229.9
	비중	30.7	31.4	26.8	8.4	1.2	-	1.4	100.0	60.9	39.1
'30년	발전량	204.2	110.5	161.0	120.9	18.7	15.5	11.8	642.6	302.0	340.6
	비중	31.8	17.2	25.1	18.8	2.9	2.4	1.8	100.0	47.0	53.0
'35년	발전량	236.0	88.9	101.1	179.9	24.3	32.8	28.5	691.5	242.8	448.7
	비중	34.1	12.9	14.6	26.0	3.5	4.7	4.1	100.0	35.1	64.9
'38년	발전량	248.3	70.9	74.3	205.7	26.4	43.9	34.9	704.5	206.7	497.8
	비중	35.2	10.1	10.6	29.2	3.8	6.2	5.0	100.0	29.3	70.7

* 무탄소발전 : 원전 + 재생 + 청정수소·암모니아

** 신규설비 중 '무탄소경쟁' 물량은 수소전소(0.7GW) 및 ESS연계형 태양광(0.8GW)으로 반영

*** 무탄소경쟁 시장 여건, 유보 물량 처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4) (석탄) 노후 석탄발전 설비 폐지(LNG·무탄소 대체) 계획 등 반영



- '24~'36년 : 노후 28기* 폐지 후 LNG 연료전환 (10차, 14.1GW) 삼척화력 #1·2 준공 (2.1GW)

* 태안 #1~6, 당진 #1~6, 보령 #5·6, 삼천포 #3~6, 동해 #1·2, 하동 #1~6, 영흥 #1·2

- '37~'38년 : 노후 12기* 는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 전환 (6.8GW)

* 영흥 #3·4, 하동 #7·8, 당진 #7·8, 태안 #7·8, 보령 #3·4·7·8 (하동 #8은 '39년 수평('30년) 도래하나, 사업자 의향에 따라 추가 반영)

** 영흥 #3 → 금산양수, 당진 #7 → 곡성양수, 보령 #4 → 봉화양수

25)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며, 노후석탄 폐지 및 전환(LNG 및 양수·수소 등) 계획의 경제성 및 탄소중립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인 상황임.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1항제1호²⁶⁾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제53조²⁷⁾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²⁸⁾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2곳에 설립·운영 중이고, 센터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탄소중립전환을 지원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을 위한 훈련성과 제고방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법 제70조제4호29)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사업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발전설비 운전, 연료 수송,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감소³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거주하면서 판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 효과³¹⁾는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원(電源) 믹스 및 발전소 폐지 일정은 국가의 전력수요 예측, 계통 안정성, 대체 전원(LNG·신재생 등)의 건설 진행 상황 및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0)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인력 중 5개 발전공기업의 근로자는 지금도 순환근무 등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직무전환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발전공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는 일자리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31) 산업통상부가 '21년에 실시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전국의 취업유발감소 인원은 주변 상권 근로자 및 발전소 연관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약 2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시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은 전력수급계획 및 계통 운영상 필요한 탄력적 조정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026년 5월 기후노동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입법 추진 경과³²⁾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석탄 목표연도와 폐지시한은 전력계통 신뢰도, 에너지안보, 산업정책, 지역경제 및 재정지원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단일 조항으로 폐지 시한만을 규정하기 보다는 폐지 대상, 폐지 일정,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입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경제성·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32) 동 제정안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거나 신뢰도 연장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특별법상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및 신뢰도 연장운전 제도와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법률 간 정합성 및 집행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기후노동위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석탄 목표 및 폐지 시한은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특별법안 주요 내용]

- 가.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협력업체, 대체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 승인 전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음.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폐지지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두고, 폐지지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
-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의 노동자 고용유지·신규채용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발전사업자와 기존 협력업체 간의 수의계약 특례 및 노동자 재배치 우선 지원 의무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 자금 보조·융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본계획 및 지방계획 수립 체계 개편

위성곤의원안(2217500)은 ①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지침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면 이를 통합하여 전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위원회가 시·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위원회가 시·군·구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③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

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본계획을

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기본계획의 내용)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신 설>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신 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가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제10조의3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도계획을 작성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 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제출·보고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 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군·구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계획의 내용, 수립·변경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 협의 등) ①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기사업계

획서와 해당 기관의 국가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기본계획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국가기본계획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가기본계획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배분 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기본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

5. 그 밖에 국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본계획 수립 체계 개편

현행법³³⁾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내용 조정을 거쳐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국민 대상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됨.

3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제로 2023년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한 후 전문가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와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친바 있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3.) 수립 경과]

일정	경과
2022.10.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12대 과제 마련
2022.8.~ 2023.3.	전문가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 - 관계부처 추천에 따라 10개 분과 72인으로 구성, 총 80회 개최
2023.1.~3.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국민 대상 공청회 실시 - 분야별 협·단체, 대·중소 기업 단체, 철강·석유화학 등 기업체, 지자체 등 총 35회
2023.4.	舊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각 관계 부처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립지침을 통해 전 부처가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춘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집행계획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 부처가 관련 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정부 차원에서 국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개정안의 국가기본계획 수립 체계 개편 관련 주요 내용]

안	내용
안 제10조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	-(기후부→위원회) 국가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제출 -(위원회→각 부처) 위원회 심의 후 수립지침 통보 -(각 부처→기후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 작성·제출 -(기후부→위원회) 각 부처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 작성 후 제출 -간담회·공청회 후 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현행과 동일) -(기후부→각 부처·지자체)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의 통보 -(정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 위원회 요청 시 국가기본계획 변경 가능
안 제10조의2 (계획 내용)	-국가기본계획의 내용(현행과 동일)
안 제10조의3 (집행계획 수립)	-각 부처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각 부처→기후부·지자체) 확정된 집행계획 통보
안 제10조의4 (국가기본계획과의 연계)	-각 부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관 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 -각 부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수립 시 기후부와 협의하고, 기후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 부여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개정안의 체계와 동일하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가 수립하는 일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³⁴⁾하고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원회에 국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의 후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출 주체(기후부)와 통보 주체(각 부처)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보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일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보 받은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공유하는 체계를 검토³⁵⁾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국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사전에 확정할 경우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달리 국가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와 내용 조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③ 모든 관계 부처가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경우 위원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고, ④ 관계 부처 계획에 대한 이견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³⁶⁾는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유로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 예산 운영 사항의 심의(제16조제9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제9조), 국가기본계획 이행 달성 여부(제13조)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제기하는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한 전정부 차원의 집행 현황을 관리³⁷⁾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4조와 시행령 별표¹³⁸⁾에 따라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부처별 행정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⁹⁾.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8) “[별표 1]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의 종류”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관계 부처 계획 67개가 규정되어 있음. 자세한 목록은 참고4. 참조

39) 위원회도 현행법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현행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체계 개편

현행법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시·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⁴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시·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⁴¹⁾하도록 규정

4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시·도계획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군·구계획은 시·도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개정안은 시·도계획 수립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가 작성한 수립지침을, 시·군·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가 작성한 수립지침을 따르도록 함으로써⁴²⁾ 국가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계획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되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경우 지역별 특수성과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 권한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유사입법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 있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개정안에서는 시·도계획 수립지침은 기후부와 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하고, 시·군·구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지 지침을 직접 작성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수립지침 작성주체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⁴³⁾가 있음.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3) 유사입법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등

현행법은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⁴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관련 주요 내용]

안 제13조의2	내용
제1항	- (각 부처→위원회) 1월 31일까지 관계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 의견 제출
제2항	- (각 부처→위원회) 5월 31일까지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제3항	- 위원회는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 검토 후 다음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 1. 국가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가기본계획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배분 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기본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 5. 그 밖에 국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 통보 사항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⁴⁵⁾하고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 재정의 배분은 탄소중립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산업,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및 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기획예산처의 종합적 판단 및 전문적 재량을 제약하고 재정 운용 체계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둘째, 동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국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예산처는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 주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조정 중인 바, 위원회에 유사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 부처 간 기능 중복과 정책적 혼선이 우려되며,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편성 관련 새로운 절차 신설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사실상 예산 편성 및 조정 과정이 기속되도록 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훼손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5.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최혁진의원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및 구조적실업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창업 방안을 추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의 주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생략)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u>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u>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재교육, 재취업, 전직(轉職)</u> 및 「 <u>사회적기업 육성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창업 ----- -----.
제52조(<u>협동조합 활성화</u>) ① 정부는 신	제52조(<u>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등</u>)

· <u>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① -----<u>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u>-----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u>----- ----- -----. 1.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u>마을기업</u> 2.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사회적기업</u> 3. 「<u>협동조합 기본법</u>」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u>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u> ② 정부는 <u>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의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 재투자</u>로 이어질 수 있도록 <u>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⁴⁶⁾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⁴⁷⁾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29개의 협동조합 및 7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례로 ‘탄소중립마을 너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 양성,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음.

4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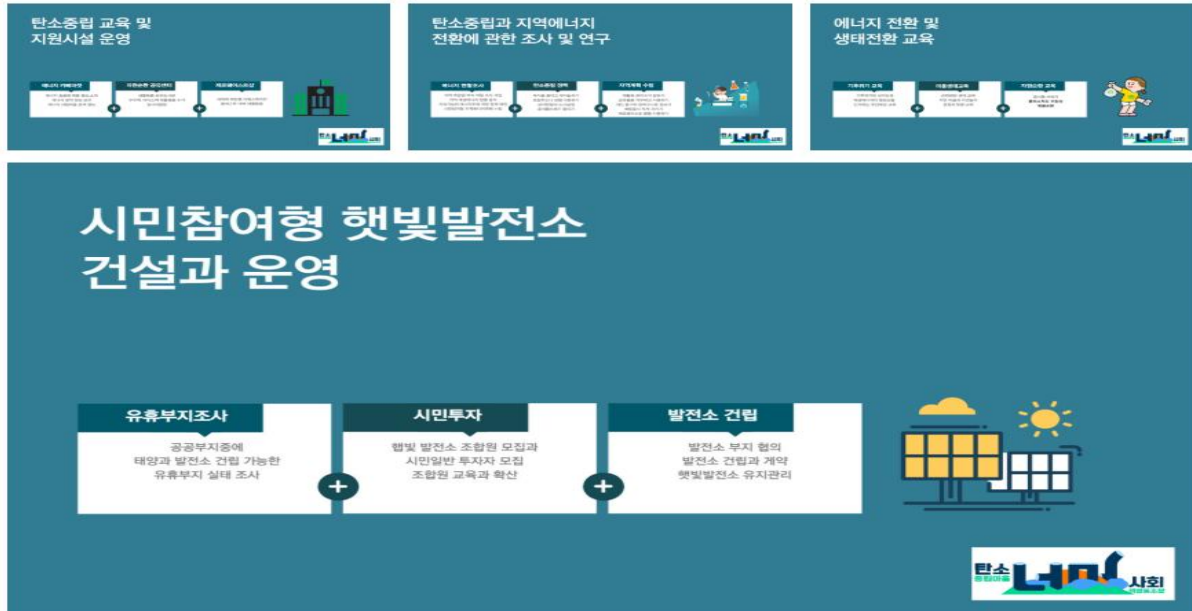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마을 너머 사회적협동조합 주요 활동]

주요활동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업전환에 따른 지원 방안에 사회적기업 창업방안을 추가하고, 기존 협동조합의 활동 목적과 주체를 확대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독려·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문	현행	개정안
제47조 제2항	-사업전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교육, 재취업, 전직, 생활지원 방안 규정	- 현행 + 사회적기업 창업 방안
제52조 제1항	-이익 공유 대상 활동 예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 이익 공유 대상 활동 예시: 현행 +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활동주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확대: 현행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52조 제2항	신설	- 사회연대경제조직 활동 수익 일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마을기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주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연대경제조직 간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8.15.시행)
정의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 기업
목적	조합원 권익 향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지역 문제 해결 및 공동체 이익 실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또한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 및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52조제1항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활기업 등 타 사회연대경제조직⁴⁸⁾까지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48) 현재 본회의 부의되어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의 조직을 포섭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①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지역수협, 수협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협동조합 등)

②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조직)

③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등)

④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투자·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6. 기타 既개정·의결사항

이하의 각 의원안별 내용은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혜경의원안: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 고려

- 2025. 11. 개정 법률 제21122호 탄소중립기본법에 관련 내용 반영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21122호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u>장애인</u> , 시민사회단체 등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u>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u>장애인</u>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u>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이 전체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	<u>미반영</u>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u>장애</u>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u>장애인</u> ,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u>대표성을 반영하여야</u> 한다.	<u>인</u>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② 서왕진의원안: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며, 이행
현황 점검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하는 한편 위원회의 계획 보완
요구권 신설

- 2025. 11. 개정 법률 제21122호 탄소중립기본법에 관련 내용 반영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21122호 탄소중립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u>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며</u>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u>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u>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u>순</u>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u>순</u>

<u>배출량</u>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u>순배출량</u>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u>당해년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연도별감축목표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계획</u>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심의하여 개선의 목적에 <u>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	<u>배출량</u>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u>순배출량</u>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u>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
---	---

- ③ 이소영의원안: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 2026.4. 개정 법률 제21517호 탄소중립기본법에 온실가스 정의 개정 조항이 반영되었으며, 기후과학위원회는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2026.3.19.)에서 의결된 사항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21527호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u>삼불화질소(NF₃)</u>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u>삼불화질소(NF₃)</u>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 정 안	舊기후특위 제3차 소위 의결 내용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국제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전항 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정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④ 박지혜의원안: 매년 6월말까지 이행현황 결과보고서 작성·공개,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 작성 등

- 2025. 11. 개정 법률 제21122호 탄소중립기본법에 관련 내용 반영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21122호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u>매년 6월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u>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90일 내에</u>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u>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u>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u>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u>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u>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⑤ 위성곤의원안(2217460):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2026.3.19.) 의결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舊기후특위 제3차 소위 의결 내용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u>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u> <u>4. 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u> <u>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u>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u>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u> <u>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u> <u>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u> <u>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u>	<u>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u> <u>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u> <u>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u> <u>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u> <u>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u>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1

기후 헌법소원 관련 헌재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	헌재 결정	헌재 결정 이유
❶ '31~'49년 감축목표 부재 ※ (심판대상)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 입법자는 '30년까지 목표만 정했을 뿐 '31년~'49년 감축목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음 ⇒ 법률유보원칙 위반, 청구인의 환경권 등 침해	○ 헌법불합치(재판관 전원 일치) -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시 '30년 목표'마저 상실되는 상황 발생 ⇒ 입법 소요 기간을 고려, '26.2.26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 ※ 獨 헌재 결정('21.4)과 유사 → 獨 정부 입법완료	○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나, '31~'49년 감축목표 無 ⇒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❷ '30년 감축목표를 '18년 대비 40%로 규정 ※ (심판대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청구인의 환경권 등 침해	○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 '30년 감축목표('18년 대비 40%)는 탄소중립에 이를 때까지의 중간 목표에 해당 - 비율 설정(40%)시 다양한 고려 요소 존재 - 위 수치만으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❸ 배출량 목표치 산정방식 관련 위헌 주장 ※ (심판대상)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 ⇒ 자의적인 용어 사용으로 감축 수준이 낮아져 (40%→36.4%) 청구인의 환경권 등 침해 * 총배출량 - 순배출량	○ 기각(합헌 4 : 위헌 5) ※ 위헌정족수 6인에 미달	○ (합헌, 4인) 현행 법령에 '배출량'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헌으로 판단 곤란 ○ (위헌, 5인) 자의적인 용어 사용으로 보호조치 수준을 낮춘 행정계획이 적용됨 (법률우위원칙,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참고 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성격)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
 - (기능)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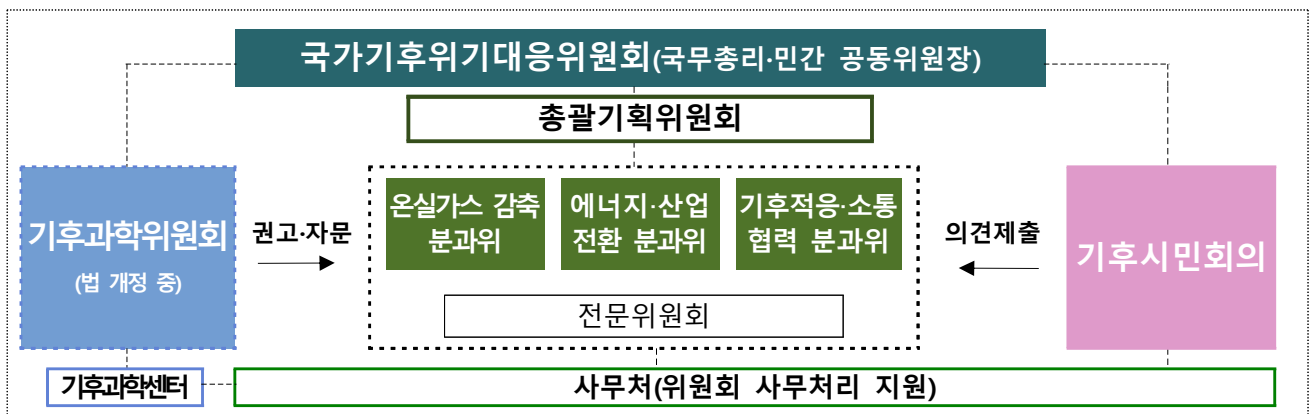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기능(심의·의결)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 (연혁) 녹색성장위원회('09.2~'22.3) +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2.3)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2.3~'25.12)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26.1.1~)**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2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자체장 1명(시도지사협의회 추천)
 - * 재정·교육·과기·외교·통일·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기후·노동·성평등·국토·해수·중기부, 기획처, 방미통·금융위, 기상·산림청, 국조실(간사)
 -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기후재정·금융,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 전문가(대통령 위촉)
 -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 위원회 구성도 >



□ 위촉직 29명

구 분				현 직
1	위 촉 직	위원장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2		온실가스 감축 분과 (9)	김송민	황영감농원 공동대표
3			김현아	닥터일렉(주) 대표이사
4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5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6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7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8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9			조영탁	건국대전력시장·신기술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
10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1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10)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2			김성욱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반부장 직무대행
13			김지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전임운용역
14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5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6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17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8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19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그린산업 애널리스트
20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21		기후적응· 소통협력 분과 (9)	김성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매니저
22			김소윤	쿨라이미트 대표
23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4			박정연	(사)지역에너지기후행동 파트너십도약 대표
25			여형범	충남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26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7			이명훈	(주)케이씨리버텍 대표이사
28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9			최소옥	봉원중학교 교사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지방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현황(광역 17/17, 기초 156/226)

[illegible]

참고 4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타부처 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5. 6.>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2항 관련)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3.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 시대 종합계획
10.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2.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4.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5.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2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4.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5.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6.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2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29.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3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3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9.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0.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4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4.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4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46.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47.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
49.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
5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5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5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5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5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5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5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5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계획
60.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6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64.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6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6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6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6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